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 현 찬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서 하여금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는 평가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권한규정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고, 또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

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
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